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(대표발의: 한일용 의원)

의 안 번 호	20-155
------------	--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. 10. .

발의자 : 한일용, 김성희, 김영미, 이민석,
장덕준, 최은하

1. 개정이유

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범죄예방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인 자율방범대연합회에 대한 법률의 근거 없는 신고 및 기록·보관 의무 등을 삭제함으로써 자율방범대 등의 자율성 보장 및 권익 보호를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자율방범대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삭제(안 제7조)
- 나. 자율방범대연합회 신고 및 기록·보관 의무 등 삭제(안 제8조)

3. 관계법령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

4. 조례안 : 붙임

5. 예산조치 : 없음

6. 기타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입법예고 : 2020. 10. 16. ~ 10. 21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를 삭제한다.

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,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“있으며,”를 “있다.”로 하며,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.

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제7조(신고 등) ① 자율방법대를 신설·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자율방법대 설립·등록 신고서(이하 “신고서”라 한다)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적합성 및 사실 여부 등을 확인·검토 한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자율방법대 설립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③ 방법대의 대표자는 방법대가 해산하거나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자체 없이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.</u></p> <p><u>④ 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마포구 자율방법대 등록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</u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삭 제></u></p>
<p><u>제8조(자율방법대연합회) ① (생략)</u></p> <p><u>② 제1항에 따른 연합회를 설립</u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8조(자율방법대연합회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삭 제></u></p>

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자율방범대연합회 설립·등록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자율방범대연합회 설립·등록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적합성 및 사실 여부 등을 확인·검토한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자율방범대연합회 설립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

④ 연합회는 합동순찰, 합동 캠페인, 공익사업 등 방범대의 각종 협력 사업을 주관하고, 방범대의 활동을 지도·지원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활동상황을 기록·보관하여야 한다.

⑤ (생략)

<삭 제>

④ -----

 있다. <후단 삭제>

⑤ (현행과 같음)

(관 계 법령)

지방자치법

[시행 2019. 12. 25.] [법률 제16057호, 2018. 12. 24., 타법개정]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